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기

각 지역 대리점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각 지역 대리점 일람
<http://abk.ac.jp/한국어/입학신청/해외연락사무소/>

학교로
직접
신청하기



①본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원을 하십시오.
<http://abk.ac.jp/한국어/입학신청/온라인입학신청/>



본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입학원서(excel)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②입학원서의 필요사항을 전부 입력한 후, E-mail로 반송해 주십시오.

본교가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E-mail로 알려드립니다.



③프린트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④필요서류를 전부 우편발송해 주십시오.
※출원기간 내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신속해 주십시오.



서류 수령 후, 본교에서 「수령확인메일」을 보냅니다. 서류를 보낸 뒤, 2주일이 지나도 「수령확인메일」이 안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순서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원부터 입국까지

출원기간				본교	출원자
4월 입학 9~10월	7월입학 12~2월	10월입학 3~4월	1월입학 6~8월	출원접수 수령확인 메일 발송	출원서류제출 · 입학검정료납부
10~11월	2월	4~5월	8~9월	입학전형	
11월하순 11월	3월상순 3월	6월상순 6월	9월중순 9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입학전형 결과 통지	입학금납부 아래는 희망자만 ·기숙사입료신청
2월말	5월하순	8월하순	11월중순	(입국관리국)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3월	6월	9월	12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결과 통지	수업료 납부 아래는 희망자만 ·일본어능력시험 대행신청 접수
4월초	6월하순	9월하순	12월하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입학허가서 발송	여권/비자취득
4월상순	6월말	9월말	1월상순		일본입국
				오리엔테이션 · 클래스편성시험 · 입학식	



学校法人ABK学館

ABK 学館 日本語 学校
A B K C O L L E G E

〒113-0021 東京都文京区本駒込2-12-12
TEL: (81-3)6912-0756 FAX: (81-3)6912-0757
E-mail: info@abk.ac.jp URL: www.abk.ac.jp

학비송금처: MIZUHO BANK HONGO BRANCH
보통예금계좌 075-2908788
수취인명: ABK COLLEGE

은행주소
東京都文京区本郷3-34-3
TEL: (81-3)3812-3261

ABK
COLLEGE

모집요강

2024~



学校法人
ABK学館

ABK学館日本語学校

*표시가 있는 서류양식은 각지역의 대리점에 요청하거나 본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것.

신청자 본인 관계서류 (1~9는 전원제출)

- | | |
|--|---|
| <p>1 입학원서*</p> <p>2 취학이유서*
모국어 또는 영어로 기입,</p> <p>3 유학동의서*</p> <p>4 양케이트*</p> <p>5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복사본 제출 불가. 증서의 복사증명된 복사본은 제출가능.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을 명기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 후 신속하게 졸업증서를 제출할 것.
최종학교를 중퇴한 경우, 재적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도 제출할 것.</p> <p>6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각 학년 성적증명서
복사본 제출 불가. 복사증명된 복사본은 제출가능.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도 제출할 것.</p> | <p>7 여권 복사본
여권을 취득한 자는 여권 복사본을 제출할 것. 과거에 일본에 입국한 적이 있는 자는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는 페이지의 복사본도 전부 제출할 것.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p> <p>8 사진4매
4cm×3cm, 정면, 상반신,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뒷면에 국적과 이름을 기입할 것.</p> <p>9 건강진단서*
본교소정양식에 의사가 기입하고 서명할 것.</p> <p>10 일본체류 시의 소속학교 발행 출석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아래는 해당자만 제출</p> <p>11 일본체류 시의 소속학교 발행 출석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일본에서의 취학·유학 경력이 있는 자만.</p> <p>12 일본국내 거주 친족의 재류카드양면복사 또는 주민표
일본국내에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만.</p> |
|--|---|

체재비·학비 등의 지변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의 A·B·C 중 해당하는 것)

A:일본국외에 있는 친족 등이 체재비와 학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 | | |
|--|---|
| <p>1 경비지번서*
지번자 본인이 작성란을 전부 자필로 기입할 것. 생활비에 는 학생에게 생활비로 송금할 예정금액의 평균금액을 기입할 것.</p> <p>2 지번자의 예금잔고증명서
금액과 날짜가 표기되어 있으며, 은행 경리담당자의 서명날 인이 있어야 한다.
회사명으로 된 예금잔고증명서는 무효.</p> | <p>3 지번자의 재직증명서(아래의 a 또는 b)
a. 회사원은 근무처가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b. 회사경영자·개인경영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등기부등 본·영업허가서 등 지번자 이름과 회사명이 기재된 서류</p> <p>4 지번자와 신청자의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번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p> <p>5 지번자의 연간소득증명서
지번자 개인의 연간소득액이 기재된 소득증명서 또는 회사 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일부국적의 학생은 제출면 제)</p> |
|--|---|

B:일본국내에 있는 친족 등이 체재비와 학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 | | |
|--|--|
| <p>1 경비지번서*
지번자 본인이 작성란을 전부 자필로 기입할 것. 생활비에 는 학생에게 생활비로 송금할 예정금액의 평균금액을 기입할 것.</p> <p>2 지번자의 예금잔고증명서</p> <p>3 주민표
세대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p> | <p>4 지번자와 신청자의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번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p> <p>5 지번자의 재직증명서(아래의 a 또는 b 또는 c)
a. 회사원은 근무처가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b. 회사경영자는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재직증명서
c. 개인경영자는 세무서의 수령직인이 찍힌 確定申告書の控え(확정신고서부분/후일반환함.)과 자신이 작성한 재직증명서</p> <p>6 지번자의 연간소득증명서
시구정촌야쿠소가 발행한 과세증명서(연간소득금액이 기재 된 것). (일부국적의 학생은 제출면제)</p> |
|--|--|

C: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 | |
|--|---|
| <p>1 경비지번서*
신청자 본인이 작성란을 전부 자필로 기입할 것. 생활비에 는 본인이 생활비로 준비할 금액의 평균금액을 기입할 것.</p> <p>2 신청자의 예금잔고증명서
금액과 날짜가 표기되어 있으며, 은행 경리담당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p> | <p>3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p> <p>4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신청자 개인의 연간소득액이 기재된 납세증명서 또는 회사 가 발행하는 증명서(일부국적의 학생은 제출면제)</p> |
|--|---|

기타 주의사항

무효가 되는 서류 : 입학원서 등의 서류는 도쿄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아래와 같은 서류는 무효가 된다.

서류의 발행일(또는 기재일)이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것. 입국관리국 제출은 4월생은 11월 하순에, 7월생은 3월 하순에, 10월생은 6월 상순경, 1월생은 9월 중순경. 발행일과 발행자의 서명이 없는 것. 글자 등을 수정액 등으로 수정한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교부인 경우 : 도쿄입국관리국 심사결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희망시기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교부 통지」를 받으면, 다음 입학시기에 다시 입학을 신청(다음 학기의 출원료·입학금은 불필요)하거나, 입학을 취소하는 연락을 할 것. 입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므로 송금받을 은행계좌번호 등을 본교 소정용지에 기입하여 본교로 보낸다.

수업료 반환에 관해서

우선 납입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소정수속을 완료한 경우에만 수업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자로 반환수속에 필요한 서류인 「입학허가서」·「반환청구서」·「여권복사본」을 본교에 전부 제출한 자. (2)입학식 이전에 입학을 사퇴한 자로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반환수속에 필요한 서류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비자 무효화 수속이 끝난 여권복사본」·「입학허가서」·「입학사퇴이유서」·「반환청구서」를 본교에 전부 제출한 자.